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건설자재 인증 및 품질관리 실태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7. 2.

감 사 원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KS 인증 행정처분 업무 등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가기술표준원

조 치 기 관 국가기술표준원

내 용

1. 업무 개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KS(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 제거 명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KS 인증제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산업표준화법」 제21조 및 제4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KS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정기심사 결과 KS 인증제품이 KS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KS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이하 “표시 및 판매정지”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별표 1의 2]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심사 중 공장심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총평점 비율이 80%

미만 60% 이상인 경우와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경미한 결함(표시 위반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개선명령’ 처분을, 중대한 결함(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에 해당되는 경우 ‘표시 및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KS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품 등에 인증표시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KS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행정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처분기준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시판품조사에서 KS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품에 인증표시를 한 것을 적발한 경우 고발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국가기술표준원의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 ★★★은 2015. 8. 5.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주식회사 ●●●●의 레디믹스콘크리트(KS F 4009)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공장심사 총평점이 73.5%(경미한 결함), 자재사용량 검사 불합격(경미한 결함), 계량기 동하중검사 7개 불합격(중대한 결함) 등 3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으므로 그중 처분기준이 가장 무거운 ‘표시 및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2015. 8. 18. 위 업체에 ‘개선명령’ 처분을 하는 것으로 기안하였고, 같은 부서의 과장 ☆☆☆은 처분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같은 해 8. 19. 그대로 결재하는 등 [별표] “KS 인증 행정처분 업무 등 처리 부적정 관련자 명세”와 같이 위 관서의

행정처분 업무 관련자 3명¹⁾은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행정처분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사유도 없이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등 행정 처분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표]와 같이 처분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1건)을 하였는가 하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행정처분요청을 받고도 짧게는 388일에서 길게는 638일까지 행정처분(4건)을 하지 않거나 고발조치(1건)를 하지 않고 있었다.

[표] 행정처분 등 미처리 현황

(단위: 일)

연번	구분 (요청일/의결일)	제조업체 (대표자)	KS 표준명 (표준번호)	부적합 사항 (결함 정도)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등	비고 (미처리일수) ¹⁾
1	정기심사 (2015. 8. 5.)		레디믹스콘크리트 (KS F 4009)	공장심사 총평점 73.5% (경미한 결함), 계량기 동하중검사 불합격 (중대한 결함), 자재사용량 검사 불합격 (경미한 결함)	표시 및 판매정지 3개월	개선명령으로 잘못 처분
2	정기심사 (2015. 10. 28.)		수도꼭지 (KS B 2331)	내압성능 중 누수 발생 (중대한 결함)	표시 및 판매정지 3개월	미처리 (388)
3	정기심사 (2015. 10. 14.)		레디믹스콘크리트 (KS F 4009)	공기량, 자재사용량 검사 성적서 불합격 (경미한 결함)	개선명령	미처리 (414)
4	정기심사 (2015. 4. 15.)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KS C 7658)	내분진 및 내습성 부적합 (중대한 결함)	표시 및 판매정지 3개월	미처리 ²⁾ (596)
5	정기심사 (2015. 3. 4.)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3)	전자파장해 기준초과 (중대한 결함)	표시 및 판매정지 3개월	미처리 ²⁾ (638)
6	시판품조사 (2016. 3. 31.)		맞대기 용접식 관아음쇠 (KS B 1522)	KS 미인증 상태로 다른 인증제품에 KS 표시	고발	미조치 (245)

주: 1. 정기심사의 경우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 날, 시판품조사의 경우 행정처분운영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016. 12. 1. 현재까지의 일수

2. '16년 6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미처리 사실을 인지하고 KS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판품조사 시험 중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한 부적합 KS 제품이 장기간 유통되었을 우려가 있다.

1) 행정처분 업무 관련자 5명 중 2015. 6. 30. 명예퇴직한 ◇ ◇ ◇과 2016. 12. 31. 정년퇴직한 000은 제외

관계기관 의견 국가기술표준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행정처분 기준과 다르게 통보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품질 확인을 할 예정이고, 행정처분 통보를 미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행정처분 처리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행정처분 처리·이행사항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 ① KS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주식회사 ♣♣♣(수도꼭지, KS B 2331), 주식회사 ♠♠♠(레디믹스콘크리트, KS F 4009)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표시 및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식회사 ◁◁◁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 ② 앞으로 부적합 KS 인증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처분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자]

공업주사 ★★ ★

과장 ☆ ☆ ☆

과장 ▲ ▲ ▲